

정관변경 대비표

□ 변경대상: 하나 UBS 아름다운미래로채권혼합투자회사 제 1 호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52 조 (투자한도)	① 6-1. (신 설)	6-1. 주식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1 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.